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6. 8 선고 2022가단346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3. 5. 18.

판 결 선 고 2023. 6. 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 중 1/100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2. 7. 11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남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22. 7. 11.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
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2. 피고 B은 원고에게 27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3. 1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
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에 관하여,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2. 7. 11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C는 피고 B에게 남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22. 7. 11. D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다. 일부 기각 부분

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 등 책임재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.

이 사건에 있어서,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 전체 지분에 관한 2022. 7. 11.자 매매계약 취소 및 이전등록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나,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B의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에 관한 소유지분은 1%였던 것으로 보이므로, 나머지 지분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원고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인데 주식회사 E 등 회사에 99%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피고 C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 정혜원

[별 지]

1. 건설 기계 명 덤프트럭

1. 등록 번호

1. 형 식 TGS37.4808X4BB

1. 규 격 25.5ton

1. 원동기 및 형식 D267LF45

1. 차 대 번 호

1. 사 용 본 거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

1. 소 유 자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피고1사이의 관계

원고와 피고1은 경기도 남양주시 F [] G 호, H 호 소재의 공
증인가 법무법인 I [] 에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. 그 내용은 피
고1이 2022. 4. 8. 54,000,000원을 차용하고 그 달부터 매월 20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80만원
씩 총 3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. 위 계약당일에 원고는 피고1의 계좌로 29,450,000
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. (갑제1,2호증)

2. 피고1,2의 사해행위

원고는 2022. 4. 8. 피고1 B [] 에게 금 54,000,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. 한편, 피고1 []
B [] 은 (차량번호 1) 25.5톤 덤프트럭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면
서 2022. 7. 11. 피고2 C [] 에게 위 덤프트럭을 매도하고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. 그렇다면 피
고1 B [] 과 피고2 C []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
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. (갑제3호증)

3. 결어

따라서 피고1 B [] 과 피고2 C [] 사이의 위 덤프트럭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
되어야 할 것이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, 피고2 C [] 는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말
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
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